

신고자 보호



신분보장

-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·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
-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



비밀보장

-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개·누설 금지



신변보호

-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,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



책임감면

-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·처분 및 징계감경 또는 면제 가능
-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

신고자 보상

보상 |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(최대 30억)

포상 |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(최대 5억)

★ 신고 상담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
1398 또는 **110**

★ 신고 방법

온라인

-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
방문·우편

-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국민권익위원회 1층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

팩스

- 044-200-7971

★ 신고 요령

-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

※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은
'청렴포털'→알려드립니다→비실명 대리신고 안내' 참조

-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,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

국민과 함께 합니다!
**정부지원금
부정수급
근절!**



신고대상

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

정부지원금이란?

법령 등에 따라 정부(지자체)가
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

부정청구의 유형

8 허위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
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
행위

8 과다청구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
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

8 목적외사용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
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
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

8 오지급

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

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



1.과학·산업 분야

- 동일·유사한 개발(연구) 계획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**연구개발비**를 중복수급
-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하여 **연구수당**을 부정수급



4.교육 분야

- 허위 교사 등록,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 목적외 사용 등으로 **유치원 보조금**을 부정수급
- 사업목적과관련 없는 공연관람비, 기념품 구입 등으로 **학교환경개선 사업비**를 목적외 사용



2.창업·고용 분야

-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**고용촉진 지원금** 부정수급
- 하지도 않은 외주용역 결과물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, 직원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**청년창업지원금** 부정수급



5.문화·체육 분야

- 유사한 행사·공연 내용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**문화예술진흥보조금**을 중복수급
- 지인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**지역체육행사 지원금**을 부정수급



3.보건·의료 분야

-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**요양급여비용**을 부정수급
- 진료한 환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**요양급여 비용**을 부정수급



6.복지 분야

- 타인 명의로 차량·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**기초생활보장급여**를 부정수급
-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, 사실혼관계 은폐 등 방법으로 **한부모가족지원금**을 부정수급